



# 「2006년 제4호 쿠르드지역-이라크 투자법」 (법률 제4호)

제1장 정의

제1절 총칙

## 제1조

이 법의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.

첫 번째- 지역: 쿠르드-이라크지역

두 번째- 정부: 쿠르드-이라크정부 세 번째- 위원회: 투자최고위 원회

네 번째- 위원장: 투자최고위원장

다섯 번째- 협회: 쿠르드-이라크지역 내 투자협회

여섯 번째- 협회장: 쿠르드-이라크지역 내 투자협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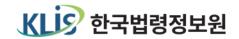
일곱 번째 - 사업: 자신에게 할당된 토지에서 국가자본 또는 외국인 자본으로 자연 인 또는 법인이 설립하고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공포 한 규칙과 지침이 적용되는 경제사업 또는 투자사업

여덟 번째- 세금과 비용: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지정한 모든 종류 의 세금과 비용

아홉 번째- 투자자: 자신의 자본으로 이 법에 따라 쿠르드-이라크 지역에 투자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자연인 또는 법인

열 번째- 관할기관: 사업에 관련한 분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정부기관





열한 번째- 투자금: 사업에 투자된 국내 또는 외국통화로 구성된 자금

열두 번째- 외국인자본: 투자자가 지역 내에서 투자한 현금, 현물 또는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권리

#### 제2절 투자분야

#### 제2조

다음의 분야에서 협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첫 번째: 가공업, 전력, 이에 관련한 서비스

두 번째: 동식물 및 삼림에 관련한 농업과 이에 관한 서비스

세 번째: 호텔과 관광 및 오락시설과 놀이공원

네 번째: 건강과 환경

다섯 번째: 과학, 기술연구와 정보기술

여섯 번째: 운송과 최신통신

일곱 번째: 은행과 보험회사와 그 밖의 금융기관

여덟 번째: 건설, 건축, 주택, 도로와 다리, 철도, 공항, 관개와 댐 사업을 포함한 기반시설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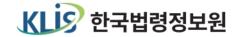
아홉 번째: 자유지대, 최신상업시장, 이에 관련한 자문서비스

열 번째: 지역 내 교육정책에 따른 모든 단계별 교육

열한 번째: 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결정한 그 밖의 분야에 서의 모든 사 업

### 제3절 외국인투자자대우





#### 제3조

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자본은 내국인투자자와 국내자본으로 대우한다. 외국인투자자는이 법에 따라 지역 내 설립한 모든 사업의 자본을 소유할 수 있다.

#### 제4절 토지할당

#### 제4조

첫 번째: 협회는 관할부처와 기관과 협의하여 각 행정구역 내 투자 사업에 할당할 장소를 정한다. 이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 정한 사업장소는 협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한다.

두 번째: 관계기관은 협회와 협의하여 지역 내 시행 중인 「국가재산매매 및 임대 법」의 규정과 관계 없이 협회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임대 또는 토지사용권을 통 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도시 내외의기본설계를 토대로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지 정 및 할당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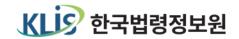
세 번째: 위원회는 지역 내 시행 중인 「국가재산매매 및 임대법」의 규정과는 별 도로 협회의 제안에 따라 협회가 제안한 적절한 가격으로 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전략적 사업에 할당한 토지를 소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토지소유 시 해당사업의 특성, 중요도, 공공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.

네 번째: 관할부동산등기기관에 투자사업에 할당한 토지에 대한 처 분불허에 대하 여 명시한다. 투자자가 모든 의무를 이행한 후 협회 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명시가 가능하다.

다섯 번째: 협회는 협회의 목적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규칙과 지침에 따라 어떠한 비용 없이 국가소유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이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여섯 번째: 투자자는 사업목적과 이 조의(세 번째)항의 규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필요를 고려한 부동산과 토지면적 및 사업기간에 관련





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설립, 확장, 다양화와 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부동산을 매입 및 임차할 수 있다.

일곱 번째: 협회가 관련규정 외 제정한 특별규칙에 의거하여 사업목 적과 사업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허용된 면적의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될 투자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분류한다.

여덟 번째: 사업장소변경 시 최초로 할당한 사업장소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.

아홉 번째: 관할기관은 협회와 협의하여 수도, 전기, 도랑, 공공도로, 통신과 그 밖 의 사업에 허용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. 이러한 목적으로 예산에서 일정 비용 을 할당한다.

열 번째: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행사하는 토지와 생산작업에 이용 되는 차량의 소유 및 임차에 관한 권리 외에도 외국인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사업 을 위하여 협회에서 제정한 규칙에 따라 협회의 동의를 취득한 후 사업에 필요한 주거용부동산과 생산설비 외 목적의 차량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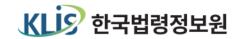
제2장 면세와 의무 제1절 세금과 관세의 면제

### 제5조

첫 번째: 투자사업이 서비스제공 및 실질적인 생산을 개시한 일자로부터 10년 간 해당사업에 대한 모든 세금과 관세를 제외한 비용을 면제한다.

두 번째: 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구, 장비, 도구, 설비, 기계에 대하여는 세금과 비용과 반입허가조건을 면제하며, 상기 명시한 기계와 장비는 그 내용물에 대하 여 협회장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지역 내 세관을 통하여 반입한 다. 기계와 장비는 사업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투자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면제 받은 세





금 의 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.

세 번째: 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부품에 대하여 세금과 비용을 면 제한다. 면세금 액은 그 내용물과 수량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협 회장의 사전결정을 통하여 기 계와 도구가격의 15% 이하로 한다.

네 번째: 사업확장, 개발 또는 현대화에 필요한 기구, 장비, 기계, 설비, 물자에 대 하여는 세금을 면제한다.

다섯 번째: 생산을 위하여 수입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5년 간 관세를 면제하며, 이 경우 협회를 통하여 원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고, 투자사업에 제공되는 안 전하고 질적인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.

여섯 번째: 투자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계, 기구, 장비와 도구를 포함하여 사업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, 이 수입물자에 대하여는 지역 내 세관을 통한 자체관세를 면제하며, 이 물자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### 제2절 추가면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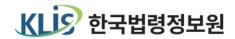
### 제6조

첫 번째: 협회는 지역 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해 당목적 에 따라 제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 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투자사업에 추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- 1- 지역 내 저성장구역에서 설립한 사업
- 2- 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간 매입한 사업

두 번째: 협회는 호텔, 병원, 놀이공원, 대학교, 학교를 포함하여 이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서비스분야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를 목적으로 한 가구, 세간과 필요물자를 포함한 구입물품에 대하여 3년 간 추가로 면세혜





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물자는 그 내용과 수량에 대하 여 협회 장이 승인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지역으로 반입하여 사업목적 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3절 법적 보장

#### 제7조

첫 번째: 투자자는 적절한 외국 또는 국내 보험회사를 통하여 투자 사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에 따라 그가 진행하 는 모든 작업에 대하 여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두 번째: 투자자는 사업에 필요한 국내외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, 지역 내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국내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.

세 번째: 외국인투자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익과 자본의 수익금을 국외 로 송금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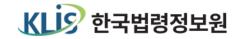
네 번째: 사업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지역 외에 있는 에이전트는 자신이 수령 한 자금과 임금을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.

다섯 번째: 외국인투자자는 사업의 청산 또는 처분 시 시행 중인 법과 관세 및 세금절차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자신의 자본을 재차 국외로 송금할 수 있 다.

여섯 번째: 투자자는 협회의 동의를 취득하여 자신의 투자 전체 또는 일부를 다 른 외국인 또는 내국인투자자에게 이전하거나 자신의 동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. 새로운 투자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이익에 있어 기존의 투자자를 대신한다.

일곱 번째: 투자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지역 내외의 은행을 통하여 국내통화 또는 국외통화로 구성되거나 국내통화와 외 국통화 모두로 구성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



여덟 번째: 주식회사이사회에 관하여 시행 중인 법을 준수하여, 이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그 출자자본에 대한 법적 형태와 특성에관계 없이 민간부문의 사업 으로 본다.

아홉 번째: 투자자는 이 법에 따라 사업에 관한 기술적, 경제적 정보의 비밀유지 권리를 가지며, 지역 내 시행 중인 법과규칙과 지침에 따라 투자 initiative를 유지 할 권리를 갖는다. 투자자가 보유한 그의 직무와 투자 initiative, 사업에 대한 기 술적, 경제적, 재정적사안에 관련한 정보를 유출한 모든 자는 이 법에 따라 처벌 한다.

#### 제4절 투자자의 의무

#### 제8조

투자자는 다음의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첫 번째: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한 투자분야 명시와 그의 재 정적 상태와 수행 중인 계약 공개

두 번째: 협회에 사업의 완료, 서비스개시일자 또는 실질적인 생산 일자 통지

세 번째: 협회의 목적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정보수집 및 획득업무 를 관할하는 협회직원에게 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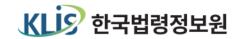
네 번째: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사업의 수입물품에 관한 기록 보관

다섯 번째: 안전한 환경, 안전, 공공보건의 유지와 국제기준에 따른 규격 및 품질관리시스템 준수

여섯 번째: 사업 내 국내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

### 제5절 투자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





#### 제9조

투자자가 이 법의 규정 또는 관할기관과 체결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고,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는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협회가 지정한 적절한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위반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시정할 유예기간 을 준다.

두 번째: 투자자가 상기 명시한 (첫 번째)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을 중지하고 위반 행위의 피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토지를 회수하고 협회는 투 자자로부터 토지에 설립한 시설(존재 시)을 공제하여야 하는 가격에 합당한 부분 만큼 점유하고, 이 가액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를 위하여 토지를 할당 받은 새로운 투자자가 지급한다.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는 자신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세 번째: 투자자가 협회의 동의 없이 사업을 위하여 할당 받은 토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할당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경우 투자자는 토지를 전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의 토지임대료의 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, 이 비용은 지역내 시행 중인 「정부부채징수법」 규정에 따라 징수하 며, 위반행위를 저지른 투자자로부터 토지전체를 회수한 경우 투자자는 회수 시토지에 건설한 시설에 관련하여 상기 명시한 (두 번째)항의 규정에따라 대우한 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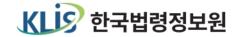
### 제3장 투자체계

제1절 투자협회와 그 체계와 업무

### 제10조

첫 번째: 협회의 명칭은 쿠르디스탄지역 내 투자협회라 하며, 법인 격을 가 지고 독자적인 재정 및 행정체계가 있으며, 이 법의 규정 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수행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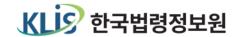


- 두 번째: 협회에는 장관급인 협회장이 있으며, 협회장은 장관의 권리 및 권한을 행사하고,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회의 활동 및업무와 다음의 각 기관의 업 무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할 및 감시한다.
- 1- 연구정보국
- 2- 사업홍보평가허가국
- 3- 법률행정재정국
- 4- 산업도시 및 지역국
- 세 번째: 협회의 본부는 지역의 수도인 아르빌에 위치하며, 협회는 쿠르디스탄지 역의 각 행정구역에 지부를 두고 지부는 총 책임자 급의 직원이 운영한다.
- 네 번째: 협회는 필요 시 부서와 과를 신설, 합병 또는 폐지한다.
- 다섯 번째: 협회의 각 기관의 조직과 지부와 업무와 권한은 협회가 제정하고 위 원회가 승인한 규칙에 따라 정한다.
- 여섯 번째: 협회는 지역 내 경제개발을 실현하고 투자전략, 계획,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고 지역 내 행정구역에 위치한 지부 간 연 계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.

### 제11조

- 협회장과 협회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 첫 번째: 수행하는 직무에 관련하여 최소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.
  - 두 번째: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



#### 제12조

투자사업에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공표한 결정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 역 내 모든 관련부처와 기관과 기구가 이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13조

협회장은 지역 내부 또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협회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업무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상기 명시한 자연 인 또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협회장이 지정한다.

#### 제2절 투자최고위워회

#### 제14조

첫 번째: 지역 내 투자최고위원회는 국무총리인 위원장과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부총리인 부위원장과 관련부처 (재무와 경제, 무역, 시당국, 기획, 농업, 산업)의 장관과 투자협회장 으로 구성된다.

두 번째: 1- 위원장은 모든 장관에게 관련부처가 담당하는 사업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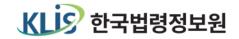
2- 위원장은 사업에 관련한 민간부문의 대표자에게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 다.

3-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안을 채택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한다. 세 번째: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.

세 번째: 1- 지역 내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협회가 제안한 투자에 관한 정책과 전략 마 련

2- 지역 내 공공계획의 일환으로 협회의 계획과 활동프로그램 승인 3- 협회의 업무와 지역 내 투자상황 및 환경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회장이 제출한 정기보고서 검토 및 이에 대한 이행사항 채택 4-





협회의 재정상황에 대한 검토 및 연간예산안 승인

5- 관련규정과 규칙에 따라 정부, 은행 또는 대출기관을 통하여 협회에 제공 되는 대출계약 및 신용상의 편의에 대한 승인. 계약과 편의제공의 목적은 협회가 그 권한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한한다.

6- 외국인투자실적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평가하여 외국인투자가 직면한 문제 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

7- 협회의 내부규정 승인

#### 제3절 협회의 예산

#### 제15조

협회예산은 지역정부의 공공예산 내에서 집행한다.

제4장 허가와 중재 제1절 사업허가발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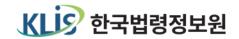
### 제16조

첫 번째: 이 법에 명시한 혜택과 특혜를 얻기 위하여 투자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사업설립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.

두 번째: 협회는 투자자가 협회에서 마련한 조건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사업설립허가를 발급한다. 협회는 지정규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, 법적, 경제적 절차와조건을 완료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세 번째: 협회는 설립허가발급일정과 관련하여 관할기관의 의견을





요청할 수 있 으며, 관할기관은 의견요청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승인, 거부 또는 변경과 같은 의견을 밝혀야 한다. 답변이 없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보며, 거부 시 결정에 대한 사유도 통지하여야한다.

네 번째: 사업설립허가요청거부 시 신청인은 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, 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으로 본다.

#### 제2절 중재

#### 제17조

투자분쟁은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해결하며, 이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한다. 우호적 인 합의가 불가한 경우 당사자는 지역 내 시행 중인 법에 명시한 중 재규정 또는 이라크가 가입한 국 제협약 및 양자협약에 명시한 분쟁 해결관련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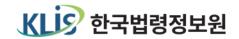
### 제3절 부칙

### 제18조

첫 번째: 「쿠르디스탄지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2004년 제89호 총리결정」은 폐지하며, 투자유치협회와 총리결정 제16조에 따라 구성한 조직도 해산하며, 그 권리와 의무와 동산 및 부동산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투자협회로 귀속된다.

두 번째: (첫 번째)항에 명시한 폐지된 결정에 따라 구성된 투자유 치협회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모든 투자사업과 시행 중인 법에 따라 아르빌 행정부로부터 허가 를 받은 투자사업은 투자사업으로 보고 사업에 허용되는 혜택과 특혜는 존속한다.





세 번째: 해산한 협회가 투자사업으로 인정하는 최종결정을 공표하지 아니한, 검 토와 평가 중인 그 밖의 모든 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따라 설립한 투자협회로 회 부하며, 협회 내 관할기관은 해산한 협회가 시행한 절차를 완료한다.

#### 제19조

투자자는 석유와 가스 또는 그 밖의 귀중한 광물자원이 매장된 토지는 소유할 수 없다.

#### 제20조

투자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는 주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장혜 택제공에 기여하여야 하며, 협회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 및 은 행관련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.

### 제21조

협회의 회계에 대하여는 재정감사기관의 감사를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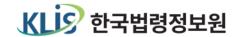
### 제22조

이 법에 명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밖의 관련법에 명시한 공 공규정을 적용하며, 적용 시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, 반하는 경우 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제23조

위원장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공포한다.





### 제24조

내각과 관계기관은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.

### 제25조

이 법은 공포일자부터 시행하며, 관보에 개재한다.

Masoud Barzani 쿠르디스탄지역 대통령